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수 산 업 협 동 조 합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에 대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31호, 2020. 5. 26. 공포, 2021. 3. 1. 시행)됨에 따라 경영이양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한 어촌계원 가입자격을 현행 지구별수협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촌계 설립인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풀어쓰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설립의 절차 및 정관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어촌계의 구역과 같거나 중첩되는 경우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자격을 이양 받은 경우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아니어도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촌계에 가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어촌계가 속해 있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준어촌계원이 어촌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어촌계 탈퇴) ① 어촌계원은 해당 어촌계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어촌계를 탈퇴할 수 있다.

② 어촌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해당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으로부터 탈퇴(조합원 제명을 포함한다)되어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5.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③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 전단 중 “좌수(座數)”를 “계좌 수”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좌수”를 “계좌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1좌”를 “1계좌”로, 같은 호 및 제3호 중 “총좌수”를 각각 “총계좌 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 중 “좌수”를 각각 “계좌 수”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좌수”를 “계좌 수”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감독상”을 “감독을 위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촌계 설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한 어촌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촌계원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촌계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된 어촌계 설립인가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어촌계의 설립) ①·② (생략) <u><신 설></u>	제4조(어촌계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u> <u>1. 설립인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u> <u>2. 설립의 절차 및 정관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u> <u>3.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어촌계의 구역과 같거나 중첩되는 경우</u>
<u>③ (생략)</u> 제6조(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u>① (생략)</u> <u><신 설></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 제6조(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u>① (현행과 같음)</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자격을 이양 받은 경우에는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아니어도 어촌계에 가입할 수</u>

② (생략)

<신설>

<신설>

있다. 이 경우, 어촌계에 가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어촌계가 속해 있는 지구별수협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준어촌계원이 어촌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의2(어촌계 탈퇴) ① 어촌계원은 해당 어촌계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어촌계를 탈퇴할 수 있다.

② 어촌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해당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으로부터 탈퇴(조합원제명을 포함한다)되어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5.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기

	<u>간내에 해당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u> ③ <u>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u>
제31조(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법 제147조에 따라 우선출자를 하게 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증권의 내용, <u>좌수(座數)</u> , 발행가액, 납입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와 우선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가가 우선출자자일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 ----- ----- ----- <u>계좌 수</u> ----- ----- ----- ----- ----- ----- -----.
제32조(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u>좌수</u>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우선출자의 청약) ① ----- ----- ----- ----- <u>계좌 수</u> ----- ----- ----- -----.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② ----- ----- -----

야 한다.

1. (생략)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생략)

6.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
금액·내용 및 좌수

7. ~ 9. (생략)

제33조(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배정
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61조(해양수산부장관 등의 감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
상 필요할 때에는 법 제169조제
1항에 따라 조합등, 중앙회, 수
협은행 및 법 제114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이하
“조합협의회”라 한다)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

1. (현행과 같음)

2. --- 1계좌----- 총계좌 수

3. ----- 총계좌 수-----

4. -----
----- 계좌 수

5. (현행과 같음)

6. -----
----- 계좌 수

7. ~ 9. (현행과 같음)

제33조(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① -----

----- 계좌 수-----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1조(해양수산부장관 등의 감독

등) ① ----- 감독을
위하여 -----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